「증치세 공제증빙 및 공제기한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국가세무총국 공문617호, 2009.11.9., 발신]

원문	번역문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 2003年以来，国家税务总局对增值税专用发票等扣税凭证陆续实行了90日申报抵扣期限的管理措施，对于提高增值税征管信息系统的运行质量、督促纳税人及时申报起到了积极作用。近来，部分纳税人及税务机关反映目前的90日申报抵扣期限较短，部分纳税人因扣税凭证逾期申报导致进项税额无法抵扣。为合理解决纳税人的实际问题，加强税收征管，	수신: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일도시의 국가세무국 2003년부터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등 공제증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공제에 대한 신고기한을 90일로 관리하여, 증치세 징수·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의 품질을 개선하고 납세자가 제때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요즘 일부 납세자 및 세무기관들은 현행 90일 신고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의견을 내고, 일부 납세자는 공제증빙을 늦게 신고하

经研究，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一、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2010年1月1日以后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和机动车销售统一发票，应在开具之日起180日内到税务机关办理认证，并在认证通过的次月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抵扣进项税额。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도로·운하 화물운송업 공용 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공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세무기관에서 인증처리를 하여야 하고, 인증처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신고기한까지 주무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도 하여야 한다.
二、实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以下简称海关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的增值税一般纳税人	2.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이하 “세관납부서”라 한다) “선(先)대조 후(後)공제” 관리방법을 실행하는 증치세

取得2010年1月1日以后开具的海关缴款书，应在开具之日起180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海关完税凭证抵扣清单》（包括纸质资料和电子数据）申请稽核比对。	일반납세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세관납부서를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주무 세무기관에 《세관 세금완납공제 증빙 목록》(문서자료 및 전자데이터 포함)을 제출하여 대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未实行海关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的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2010年1月1日以后开具的海关缴款书，应在开具之日起180日后的第一个纳税申报期结束以前，向主管税务机关申报抵扣进项税额。	세관납부서에 대한 “선대조후공제” 관리방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세관납부서를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180일 뒤 첫 납세신고 기한까지 주무 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야 한다.
三、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2010年1月1日以后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机动车销售统一发票以及海关	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도로·운하 화물운송업 공용 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공용 세

缴款书，未在规定期限内到税务机关办理认证、申报抵扣或者申请稽核比对的，不得作为合法的增值税扣税凭证，不得计算进项税额抵扣。	금계산서, 세관납부서를 받고 규정된 기한까지 세무기관에서 인증·공제신고 및 대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부합하는 증치세 공제증빙을 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四、增值税一般纳税人丢失已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应在本通知第一条规定期限内，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增值税专用发票使用规定〉的通知》（国税发[2006]156号）第二十八条及相关规定办理。	4.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발급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는 경우 이 통지 제1조가 규정하는 기한까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사용규정〉 개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2006]156호） 제2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增值税一般纳税人丢失海关缴款书，应在本通知第二条规定期限内，凭报关地海关出具的相关已完税证明，向主管税务机关提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세관납부서를 분실하는 경우 이 통지 제2조가 규정하는 기한까지 통관신고지역 세관이 발급한 관련 납세완료

出抵扣申请。主管税务机关受理申请后，应当进行审核，并将纳税人提供的海关缴款书电子数据纳入稽核系统进行比对。稽核比对无误后，方可允许计算进项税额抵扣。	증명에 따라 주무 세무기관에 공제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 세무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진행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세관 납부서 전자데이터를 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 비교 대조하여야 한다.
五、本通知自2010年1月1日起执行。纳税人取得2009年12月31日以前开具的增值税扣税凭证，仍按原规定执行。	5. 이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납세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증치세 공제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防伪税控系统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进项税额抵扣问题的通知》（国税发[2003]17号）第一条、《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货物运输业税收征收管理的通知》（国税发[2003]121号）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납세증명 위조방지 시스템으로 발급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2003]17호）제1조, 《화물운송업 세수징수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

附件2《运输发票增值税抵扣管理试行办法》第五条、《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货物运输业税收征收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明电[2003]55号）第十条、《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和废旧物资发票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4]128号）附件1《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稽核办法》第三条、《国家税务总局关于货物运输业若干税收问题的通知》（国税发[2004]88号）第十条第（三）款、《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抵扣进项税额问题的通知》（国税发[2004]148号）第二条、第三条、第	세무총국 공문[2003]121호) 별표2《운송 세금계산서 증치세 공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제5조, 《화물운송업 세수징수관리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 전보[2003]55호）제10조,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와 폐기물 세금계산서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 공문[2004]128호）별표1《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 검사방법》 제3조, 《화물운송업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2004]88호） 제10조제(3)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2004]

四条、《国家税务总局关于推行机动车销售统一发票税控系统有关工作的紧急通知》（国税发[2008]117号）第五条、《国家税务总局关于部分地区试行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先比对后抵扣”管理办法的通知》（国税函[2009]83号）第一条规定同时废止。	148호) 제2조·제3조·제4조, 《자동차 판매 공용 세금계산서의 납세시스템 관련 업무 보편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2008]117호) 제5조, 《일부 지역의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 “선대조 후공제” 관리방법 시범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국가세무총국 공문[2009]83호) 제1조 규정은 이 통지의 집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六、各地应认真做好本通知的落实与宣传工作，执行中发现问题，应及时上报国家税务总局（货物和劳务税司）。	6. 각 지역은 이 통지를 책임을 다하여 확실하게 실행하고 업무를 홍보하여야 하며 집행 중 발견하는 문제는 즉시 국가세무총국(화물·노무·세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